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공익성기부 지출의 기업소득세 세전 이월공제 정책에 관한 통지**  재세[2018]15호  각 성•자치구•직할시•계획단열시 재정청(국) •국가세무국•지방세무국, 신장(新疆)생산건설병단 재정국 :  <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> 및 <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>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익성기부 지출의 기업소득세 세전 이월공제 관련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.  1.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급(현급 포함)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구성부서•직속기구를 통하여 자선행사•공익사업에 사용된 기업의 기부 지출 중 연간 이익총액의 12% 이내의 부분은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용한다. 연간 이익총액의 12%를 초과하는 부분은 3년간 이월하여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용한다.  본 조에서 공익성 사회조직이라 함은 법에 의거하여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한 조직이여야 한다.  본 조에서 연간 이익총액이라 함은 기업이 국가통일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0보다 큰 액수를 지칭한다.  2.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익성기부 지출과 전년도 이월분 공익성기부 지출을 당해 연도에 세전공제함에 있어 기업의 당해 연도 연간 이익총액의 12%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 3. 공익성기부 지출 발생 후 당해 연도에 세전공제가 이뤄지지 아니한 부분은 차기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나 이월 연수는 기부 발생연도의 차기연도부터 계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  4. 기업은 공익성기부 지출을 계산•공제함에 있어 전년도 이월분 기부 지출을 우선적으로 공제한 후 당해 연도에 발생한 기부 지출을 공제하여야 한다.  5. 이 통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.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공익성기부 지출로 2016년에 세전공제가 이뤄지지 아니한 부분은 이 통지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.  재정부  세무총국  2018년 2월 11일 |  | **关于公益性捐赠支出企业所得税税前结转扣除有关政策的通知**  财税〔2018〕15号  各省、自治区、直辖市、计划单列市财政厅（局）、国家税务局、地方税务局，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：  　　根据《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》和《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》的有关规定，现就公益性捐赠支出企业所得税税前结转扣除有关政策通知如下：  　　一、企业通过公益性社会组织或者县级（含县级）以上人民政府及其组成部门和直属机构，用于慈善活动、公益事业的捐赠支出，在年度利润总额12%以内的部分，准予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；超过年度利润总额12%的部分，准予结转以后三年内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。  　　本条所称公益性社会组织，应当依法取得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。  　　本条所称年度利润总额，是指企业依照国家统一会计制度的规定计算的大于零的数额。  　　二、企业当年发生及以前年度结转的公益性捐赠支出，准予在当年税前扣除的部分，不能超过企业当年年度利润总额的12%。  　　三、企业发生的公益性捐赠支出未在当年税前扣除的部分，准予向以后年度结转扣除，但结转年限自捐赠发生年度的次年起计算最长不得超过三年。  　　四、企业在对公益性捐赠支出计算扣除时，应先扣除以前年度结转的捐赠支出，再扣除当年发生的捐赠支出。  　　五、本通知自2017年1月1日起执行。2016年9月1日至2016年12月31日发生的公益性捐赠支出未在2016年税前扣除的部分，可按本通知执行。  财政部  税务总局  　　2018年2月11日 |